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19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박수영 · 김민전 · 서천호
곽규택 · 김재섭 · 김 건
박성훈 · 최은석 · 유상범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해당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그 시점 및 방법 등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바, 해당 재원 고갈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

지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제5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② 제1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장기 재정추계·재정전망 등을 실시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장기재정추계에 활용할 수 있다.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재정추계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 설></u> 4.·5. (생략) ④ ~ ⑪ (생략) <u><신 설></u>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9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u> 4.·5.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u>제92조의2(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u>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
보험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
무원연금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
연금

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
연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제1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장기 재정추계·재정
전망 등을 실시한 경우 기획예
산처장관은 해당 자료를 제1항
에 따른 장기재정추계에 활용
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재정추계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
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장
기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